

농약안전성을 말한다 ④

농약의 안전과 안심 과학자의 역할(III)

소비자는 '안전하다' 강조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의심 여전

■ 홍보부

「안전(安全)」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나 과학적인 검증결과가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믿을 수 없어』, 『이해되지 않아』하는 경우는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안심을 하지 않는다.

국가(후생노동성, 환경성이나 농림수산성)가 농약전문가·과학자를 총 동원해서 과학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농약의 1일섭취허용량(ADI)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이 양 이하의 잔류농약을 섭취하더라도 건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 했어도 소비자단체, 생협 혹은 매스컴 쪽에서는 이해하려 하지 않고 『농약은 위험하다』, 『잔류농약은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등의 이론을 펴게 된다면, 소비자는 농약에 안심감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과학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소비자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농약사

용량을 줄이더라도, 다음에는 『사용량을 좀 더 줄이지 않는다면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안전하다 해도, 안심할 수 없어』, 『안전에 관계없이, 안심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농약을 둘러싼 상황으로 생각된다.

「안심(安心)」이라 하는 것은 실제 미묘한 것이다.

한편으로 소비자는 매일매일의 식사를 통하여 작물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각종의 천연화학물질, 곰팡이나 미생물이 생성하는 독소 또는 저장 가공 조리나 섭취과정에서 생성하는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섭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안전이나 불안전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조사할 수가 없다』,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매스컴이 보도하지 않는다』, 『알려져 있지 않다』 등의 이유로 소비자는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안심하고, 믿고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계없이 안심된다』라고 생각 한다.』 혹은 『안전한가 불안정한가의 데이터가 없어, 조사할 수 없어, 알 수가 없으므로 안심할 수 있어』라고 알고 있다(표 1).

표 1. 『안전』과 『안심』의 관계

■ **농약 · 잔류농약**

『안전성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어』
『안전성에 관계없이, 안심할 수 없어』

■ **천연화학물질**

『안전에 대해 확증이 없어도 안심된다』
『생각하고 있고』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조사할 수 없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안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농약의 1일섭취허용량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즉 소비자의 잔류농약 섭취가 1일 섭취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작물이나 식품에 있어 잔류에 관한 기준(잔류기준이나 등록 보류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자(농가)가 준수해야 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농약이 사용되는 경우를 예상해서 1일섭취허용량이나 잔류에 관한 기준과 함께 농약사용기준에는 각각 곱셈이 안전계수가 부여되어 문제가 야기 되어도 소비자(국민)가 1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하는 농약을 섭취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다

동시에 연간 50만건에 달하는 작물 중 잔류농약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잔류농약의 검

출빈도가 0.5%정도가 되거나,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잔류하는 비율이 0.05% 이하로 되는가를 확인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 영양조사를 실시하고, 1일 섭취허용량을 초과 섭취되는 농약이 존재하지 않도록(거의 농약이 1일 섭취허용량의 5%이하)확인하고 있다. 이와같이 과학적으로 볼 때 잔류농약은 『안전하다』 함과 관계없이, 소비자에 따라서는 『안심할 수 없다』 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안전과 안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안이하게 한 세트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은 그 두 용어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

이 안전과 안심 사이의 커다란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국가, 행정, 과학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나 일반소비자, 또한 매스컴 관계자에게 농약에 대해서, 농약의 안전성 혹은 그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이나 과학자는 극히 전문적인 『농약의 안전성에 관한 검증결과』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일반 소비자까지도 이해하기 쉽게 전하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국가나 지방행정기관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설정한 각종의 농약안전기준과는 모순 되는 『농약 사용을 절감』한다는 환경보전형 농업이나 유기농업을 권장하고 있다. 국가나 행정기관도 스스로 과학자를 총동원해서 완성시킨 농약의 안전기준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닐까. Y